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거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1. 4. 16(금) 10:00

### 제22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# 검토보고서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복지가족국 소관)



## 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073호

나. 제 출 자 : 김경완 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1. 4. 5.

라. 회부일자 : 2021. 4. 5.

#### 2. 제안이유

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구직활동 보장 및 촉진을 위해 취업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○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지워 규정 정비(안 제10조제3항)

○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규정 신설 (안 제10조제4항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제3조,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1. 4. 5. ~ 2021. 4. 12.

2) 신ㆍ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
#### 5. 검토의견

#### 가. 조례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구직활동 보장 및 촉진을 위해 취업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#### 나. 주요 내용

-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규정 정비(안 제10조제3항)
-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규정 신설 (안 제10조제4항)

#### 다.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·정비하는 것으로 「청년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청년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관계법령

#### □ 청년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청년"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- 2. "청년발전"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,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, 고용촉진, 능력개발,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·경제· 사회·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.
- 3. "청년지원"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·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.
- 4. "청년정책"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